

용도지역별 조사대상구간 선정 과정(제6조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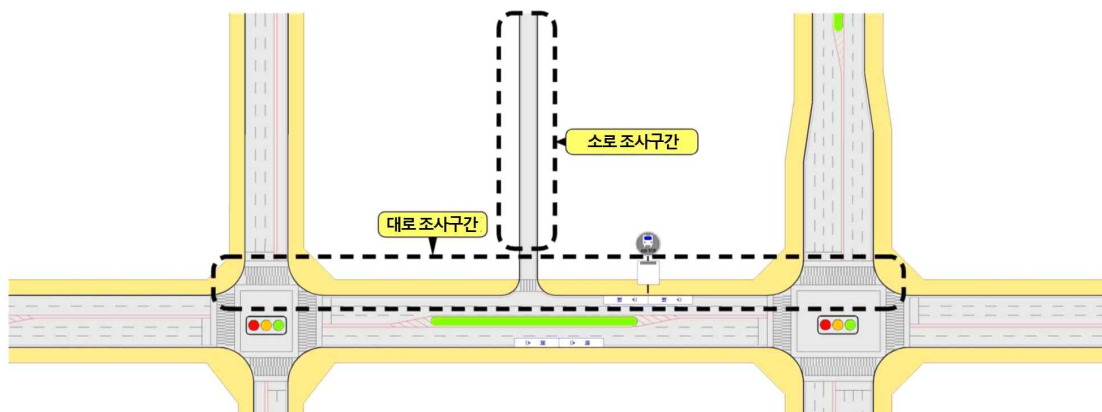
주거지역	읍·면·동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할 행정구역 중 인구 밀도(인구수/㎡)가 높은 읍·면·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○ 필요한 경우 인구 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읍·면·동을 추가 선정 가능
	구간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정된 읍·면·동의 주거지역 중 버스 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정류소를 선정 ○ 해당 정류소가 위치한 보도 구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며, 좌우 교차로의 횡단 보도를 포함 ○ 대로와 인접한 소로를 포함하여 선정하며, 조사범위는 각 500m 내외로 함
상업지역	읍·면·동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할 행정구역 중 종사자수 밀도(종사자수/㎡)가 높은 읍·면·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○ 필요한 경우 종사자수 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읍·면·동을 추가 선정 가능
	구간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정된 읍·면·동의 상업지역 중, 버스 정차대수가 가장 많은 정류소를 선정 ○ 해당 정류소가 위치한 보도 구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며, 좌우 교차로의 횡단 보도를 포함 ○ 대로와 인접한 소로를 포함하여 선정하며, 조사범위는 각 500m 내외로 함

※ 단, 인구 30만 미만의 시·군 단위의 경우 버스 정차대수가 적어 정류소 주변 보도에 보행량이 많지 않아 정류소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(군청), 시장, 터미널, 철도역 등 보행량이 많은 보행유발시설 주변 보도를 조사구간으로 선정할 수 있음

※ 선정된 정류소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있는 경우에는 가로변 보도 중 침두시 보행량이 많은 쪽 보도 구간을 조사대상으로 함

※ 대로 : 보차분리된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보도구간(부득이한 경우 왕복 2차로 가능)

※ 소로 : 도로폭 12m 미만이며,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접근기능이 높은 도로



<보행교통 개선지표 조사구간의 선정>